

「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농작물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피해 조사를 읍·면·동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신설(안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)
- 피해 신고 및 조사 방법 변경(안 제7조)
- 피해보상절차 일부 변경(안 제8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상액 산정기준을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우리 시의 조례안을 보면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액을 감액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나, 타 시·군에서는 첫 지급시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 정도에 따라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,
- 또한,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